

후대교배종 옥수수 MON863 × NK603

1. 법적근거

-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2
-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」 제1-3조, 제3-2조

2. 후대교배종 위해성 심사현황

	모품종 1	모품종 2
Event 명	MON863	NK603
특성	해충저항성	해충저항성
심사완료일		

3. 심사경위

○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 제 7조의 2에 따라 위해성심사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간 인공교배에 의해 육종된 후대교배종은 상호작용 유무 및 후대교배종의 특성*등을 검토함

*분자생물학적 분석, 단백질 발현량 비교, 생물활성, 영양성분 분석 등

- LMO 위해성 심사 접수('07.11.09.) 및 심사 진행

4. 심사결과

- 후대교배종 GM옥수수는 상호작용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가 필요 없음으로 결론